



제426회국회(임시회)
제1차 교육위원회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외국인 학생 선발 시 대학이 취업 정보 등을 제공 〉
■ 이학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9606호)

2025. 6.

교 육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천우정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이학영의원 등 11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4. 7.
3. 회부연월일 : 2025. 4. 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고등교육법」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.

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,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7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해외인재 확보 및 외국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주 등을 위하여 대학의 장이 외국인 학생 선발 시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,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7제2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34조의7(외국인 학생의 선발·지원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 ④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, 방법,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34조의7(외국인 학생의 선발·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대학의 장은 해외인재 확보 및 외국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주 등을 위하여 외국인 학생 선발 시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,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 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 ⑤ <u>제2항에 따른 취업정보 제공 및 제4항</u>----- ----- -----

	-----.
--	--------

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동법 제34조의7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·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내용임¹⁾.

개정안은 위 내용에 제2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대학의 장이 해외인재 확보 및 외국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주 등을 위하여 외국인 학생 선발 시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,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동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다면 외국인 학생을 모집할 경우에 외국인들이 지원하려는 학과의 취업 현황이나 향후 전망, 취업 비자 발급 편의를 위한 정보 등을 사전에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,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학과 선택을 할 때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교육부는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유학생에 대한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인재 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

1) 3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·조정하여 2024. 11. 27. 국회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고, 2024. 12. 26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. 1. 21. 공포되었음.

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7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·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·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2025. 7. 22. 시행되는 신설 조항>

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
임²⁾.

다만, 여러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선발 시 제공되는 취업정보는 졸업 시점의 실제 취업 상황과 다를 수 있고, 특정 학과가 특정 진로와 연계된다는 인식을 보다 강화하여 외국인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 가능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개정 내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187

2) 다만, 비자 발급에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대학이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.